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3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조지연 · 박수영 · 김용태
김승수 · 이인선 · 조은희
김상훈 · 서일준 · 강선영
정성국 · 김대식 · 유용원
조정훈 · 임이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4인”을 각각 “3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 ----- ----- -----.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 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4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4인</u> 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단서 신설>	1. ----- ----- <u>3인</u> ----- ----- - <u>3인</u> ----- ----- <u>. 다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